

부속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09.8.18		16		
2	2012.12.21		17		
3	2014.5.13		18		
4	2015.2.3		19		
5	2020.11.30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부속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부속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문의 효율적 연구를 위하여 각 부속연구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5.2.3.>

제2조 (설립요건) 본 대학교에 부속연구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어 총장이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<개정 2009.8.18., 2015.2.3.>

1. 부속연구기관의 연구대상 분야가 대학특성화에 부합되고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.<개정 2015.2.3.>
2. 대학발전, 대외 연구비 획득 및 공동연구 활성화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.
3. 부속연구기관 참여인력이 최소한 본 대학교 해당분의 전임교원 5인 이상이어야 한다.<개정 2015.2.3.>
4. 부속연구기관의 사업계획에는 그 구체적인 실천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.<개정 2015.2.3.>
5. 부속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자체조달 능력이 있어야 한다.<개정 2015.2.3.>

제2조의2 (종류 및 주관) ① 부속연구기관의 종류 및 주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립운영유예연구소 : 제3조에 따른 설립운영계획서를 제출한 뒤 설립을 승인받아 자립운영유예기간 중에 있는 연구기관
2. 자립운영연구소 : 자립운영유예 기간을 거친 뒤 대학 부속연구소로 승격되기 전단계의 연구기관
3. 대학부속연구소 : 본 대학교 학칙에 부속기관으로 등록된 연구기관 <개정 2020.11.30>

② 부속연구기관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연구협력처에서 주관한다.

[조문개정 2015.2.3.]

제3조 (설립절차 및 심의) 부속연구기관을 설립 및 심의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<개정 2015.2.3.>

1. 부속연구기관 설립추진위원회는 본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결성한다.<개정 2015.2.3.>
2. 설립추진위원회는 다음 내용을 기술한 부속연구기관 설립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.<개정 2014.5.13., 2015.2.3.>
 - 가. 설치사유 및 배경 : 설립목적, 설립배경 및 필요성
 - 나. 연구기관 조직표(기구) : 연구소 내부조직(연구부 및 연구실)<개정 2015.2.3.>
 - 다. 연구기관 규정 : 본 대학 제규정관리 규정에 의하여 작성<개정 2015.2.3.>
 - 라. 연구기관 사업계획 : 연구소 내부조직별로 세분하여 작성<개정 2015.2.3.>
 - 마. 연구기관 운영예산 : 연간 총수입 및 지출을 계상<개정 2015.2.3.>
 - 바. 기타 참고자료 : 연구원 인적사항, 최근 2년간 연구비 수혜실적, 연구기관 운영비 자체 조달능력 등<개정 2015.2.3.>
3. 설립추진위원회가 주관부서에 접수한 설립계획서는 제4조에 따른 학술연구비

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,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자립운영유예연구소로 설립된다. 단, 대학의 특성화 및 발전전략 달성을 위하여 총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대학부속연구소로 즉시 설립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13., 2015.2.3., 2020.11.30.>

4. <삭제 2015.2.3.>

제4조 (학술연구비심의위원회) ① 부속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학술연구비심의위원회에서 총괄한다.<개정 2009.8.18., 2015.2.3.>

② 학술연구비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부속연구기관장에게 시정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.<개정 2014.5.13., 2015.2.3.>

③ <삭제 2015.2.3.>

④ 그 외 평가 및 심의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신설 2015.2.3.>

제5조 (운영지침) ① 부속연구기관은 자립원칙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2.3.>

② 유예기간동안 외부수탁과제 계약시 가칭 부속연구기관 명의의 계약을 허용한다. <개정 2009.8.18., 2014.5.13., 2015.2.3.>

③ 부속연구기관장은 매년 소속 연구기관의 제반 활동 실적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2.3.>

④ 그 외 부속연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신설 2015.2.3.>

제6조 (구성) 부속연구기관은 소장을 두며, 운영 및 학술연구 진흥에 기여를 목적으로 부소장, 운영부장, 연구위원, 전임연구원, 감사, 간사 등을 둘 수 있다.

제7조 (통·폐합) ① 연구분야 및 연구목적이 유사한 부속연구기관이 통합을 원할 경우 학술연구비심의위원회를 거쳐 총장 승인 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<전문개정 2009.8.18.><개정 2014.5.13., 2015.2.3.>

② 부속연구기관의 통합으로 없어진 부속연구기관의 운영비 및 자산은 통합된 부속연구기관으로 흡수된다.<신설 2015.2.3.>

③ 기타 통·폐합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은 학술연구비심의위원회를 거쳐 총장 승인 후 결정된다.<신설 2015.2.3.>

제7조의2 (해산) ① 부속연구기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학술연구비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산을 통보한다.

1. 부속연구기관의 평가결과가 부속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지침에 정한 기준 미달인 경우

2. 부속연구기관이 자진 해산을 신청한 경우

② 해산된 부속연구기관의 운영비 및 자산은 해산 통보 후 주관부서로 모두 흡수된다.

③ 해산된 부속연구기관의 이름으로 재설립을 하는 경우에도 제3조에 따른 설립절차를 밟아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5.2.3.]

제8조 (회계) 주관부서 소속 부속연구기관 운영비 회계연도는 한국항공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르며 회계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한다. [본조신설 2009.8.18.] <개정 2014.5.13., 2015.2.3.>

부 칙

1. 부속연구기관의 형태에 준하는 유사 연구기관은 그 목적에 따라 위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 운영될 수 있다.
2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7.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하되,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에 의해 설립된 부속연구기관은 위 규정에 준하지 않고 설치 운영될 수 있다.
8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